한 동 대 학 교 총 동 아 리 연 합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동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Handong Student Club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활동은 한동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개교 이념을 기초로 하여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적 담당자인 전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대학의 자율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감을 목적으로 하며, 각 동아리들의 활성화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전 동아리들의 권익을 보호,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는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내 학생 자치 기구로 둔다.

제4조 (본회의 구성)

① 본회는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및 그 회원으로 구성되며, 동아리는 회칙 제8장에 의거 정동아리 및 아기동아리를 의미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회의 회원은 당해 학기에 한동대학교에 등록한 모든 동아리 회원으로 한다.
- ② 정동아리에 소속된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고 아기동아리에 소속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행사와 제반 활동에 대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행사의 기본 목적과 본교의 근본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④ 정회원은 본회의 행사와 제반 활동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⑤ 준회원은 본회의 행사와 제반 활동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심의,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안, 추가경정안, 결산안 심의 등 예산 심의에 관해서는 예외로 심의,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의 2 (동아리의 권리)

- ① 정동아리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동아리방과 비품 및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아기동아리는 제6조에 명시된 준회원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단 동아리방과 비품 및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의 3 (동아리의 의무)

- ① 정동아리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회비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아기동아리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회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 아래 본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총 동 아 리 연 합 총 회

제8조 (지위)

총동아리연합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 ① 총회는 각 동아리의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단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각 직책별 인원은 각각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동아리 회장단을 역임할 수 없다.

제10조 (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탄핵 안건 시에는 분과대표 중 한 명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이 때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는 분과대표는 분과대표들 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제11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 발의된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안을 의결한다.
- 2. 총동아리연합회칙의 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 3.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을 선출한다.
- 4. 집행부 궐위시 임시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을 선출한다.
- 5. 기타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소집)

- ① 총회는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동아리 대표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와 분과대표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집행부 궐위시에는 분과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안건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총회가 개회되지 못했을 경우 안건은 동아리대표자회의로 회부된다.

제13조 (의결) 구성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참관)

- ① 총회는 공개하여 회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 구성원의 위임)

① 동아리 회장, 부회장, 총무는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원 중 1인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소집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집 2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직무대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총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고지하여야한다.

제 3 장 동 아 리 대 표 자 회 의

제16조 (지위)

동아리대표자회의는 총동아리연합총회 다음의 의결 기구이다.

제17조 (구성)

동아리대표자회의는 각 동아리의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재 시에는 각 동아리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책임 있는 대표자는 회장단에 한한다.

제18조 (의장)

- ①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탄핵 발의안이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대표자회의에 한하여 분과대표 중 1인이임시 의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 총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의결
- 2. 총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발의
- 3. 본회의 회칙에 대한 최종 해석
- 4. 본회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
- 5.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총동아리연합회칙 위반 시 총회에 탄핵안 발의
- 6. 집행부 산하의 각 부와 특별 기구의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한 승인
- 7. 집행부 각 부서장의 해임에 대한 의결
- 8. 102차 승격 심사 및 의결
- 9. 제6장에 따른 분과대표 선출
- 10. 기타 의장의 심의를 거쳐 안건으로 채택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제20조 (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매 학기 2회로 한다.
- ② 임시 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분과대표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안건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

재적 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 (참관)

- ① 동아리대표자회의는 공개하여 회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총 동 아 리 연 합 회 장 단

제23조 (지위 및 책임)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 및 집행부의 수장이 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총동아리연합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은 자유로운 동아리활동을 보장할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의무를 가진다.

제24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회와 동아리대표자회의와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회칙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의 집행을 관장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의 동의 하에 집행부 산하기구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⑤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집행부 예산집행을 결제한다.
- ⑥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집행부의 산하 기구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 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⑧ 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부 업무를 통괄한다.

제25조 (임기)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선출 및 자격)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은 공동 입후보하며, 회원의 선거로 선출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단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9장에서 정한다.

제 5 장 집 행 부

제27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집행 기구이다.

제28조 (구성)

- ① 집행부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각 부서로 구성한다.
- ② 집행부 각 부서장은 집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동의 하에 적정 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역할 및 권한)

- ① 집행부는 본회의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집행부는 제36조에 의거한 교비 지원 예결산을 편성·분배한다.
- ③ 집행부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④ 집행부의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 ⑤ 집행부는 각 동아리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제30조 (회칙)

집행부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동아리연합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동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회칙을 따른다.

제 6 장 분 과 대 표

제31조 (지위)

각 분과대표는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와 사업 전반을 감사한다.

제32조 (구성)

- ① 각 분과별로 정회원 1인을 분과대표로 호선한다. 단,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정회원 2인을 분과대표로 둔다.
- ② 각 분과는 학술, 전시, 체육, 공연, 봉사, 종교, 전산의 7개 분과로 나눈다.

제33조 (선출 및 자격)

①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자율적으로 대표 1인을 선출한다. 단,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2인을 선출한다.

제34조 (임기)

각 분과대표들의 임기는 선출 시부터 다음 분과대표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각 분과대표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집행부의 사업 전반을 감사한다.
- ② 과반수의 연서로 임시 총회 및 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의 사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

분과대표는 분과대표회의를 진행한다.

제37조 (탄핵권)

각 분과대표들은 총동아리연합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될 시 총회를 소집하고 탄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38조 (수입)

- ① 본회의 재정은 동아리회비, 학생경비, 교비 지원,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본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 ③ 각 사회 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2기로 분할하여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 ③ 회계연도의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 ① 본회의 예산은 집행부 지출과 분과지원금으로 나뉜다.
- ②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본회의 예산을 심의한다.

제41조 (집행)

- ① 각 동아리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 ② 예산집행 시에는 일체의 전표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결산)

결산은 매 학기말에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 8 장 등 록

제43조 (신규 등록)

- ① 동아리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의 양식을 집행부에 제출하여 1차 승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단체 활동 등록원
- 2. 지도 교수 취임 승낙서
- 3.15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
- 4. 동아리 회칙
- ② 동아리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는 설립목적과 취지, 성격이 기존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43조의 2 (1차 승격 심사)

- ① 1차 승격 심사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한 학기에 1회 시행한다
- ② 1차 승격 심사를 신청한 단체가 심사를 통과하면 아기동아리가 된다.
- ③ 아기동아리로 승격되면 의장이 이를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함께 아기동아리로 등록이 완료된다.

제43조의 3 (2차 승격 심사)

- ① 정동아리로의 승격을 희망하는 아기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후 2차 승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43조 1항의 양식 제출
- 2. 1년 이상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참석
- 3 . 활발한 교내, 교외 활동
- 4. 15인 이상의 활동 인원 유지
- 5. 최초 아기동아리 등록 후 2년 이상 활동 유지
- ② 2차 승격 심사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한 학기에 1회 시행한다.
- ③ 2차 승격 심사를 신청한 아기동아리가 심사를 통과하면 정동아리가 된다.
- ④ 정동아리로 승격되면 의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함께 정동아리로 등록이 완료된다.
- ⑤ 2차 승격 심사에서 동아리 승격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기 이후 1학기 이내에 2차 승격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다시 2차 승격 심사를 받았을 때도 승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명 조치한다.
- ⑥ 본 회의 정동아리 수는 51개로 제한하며, 정동아리가 51개일 경우 2차 승격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44조 (재등록)

- ① 모든 동아리는 매 학기 15인 이상의 단체 활동 등록원을 작성하여 본회에 재등록한다.
- ② 본 회의 장이 판단하기에 천재지변, 재해, 재난 등이 동아리 활동에 영향을 미쳐 15인 이상의 단체 활동 등록 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정동아리에 한하여 12인 이상의 단체 활동 등록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45조 (등록 기간)

신규등록 및 재등록은 모두 매 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단, 승격 심사는 학기 중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재등록의 경우 임원 및 지도교수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휴면신청)

- ① 동아리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원하는 정동아리는 최장 1년 간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휴면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개강 25일 내 아래의 양식을 준비하여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휴면 신청서

- 2. 직전학기 동아리 회장단 중 1인의 동의서
- 3. 해당 학기 동아리 회장단 중 1인의 동의서
- 4. 지도 교수 동의서
- ③ 동아리 활동을 재개하기 원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 1. 단체 활동 등록원
 - 2.15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
 - 3. 동일한 지도 교수의 취임 승낙서 (단, 해당 교수 유고 시 적용하지 않는다)
 - 5. 동아리 회칙
- ④ 휴면신청한 정동아리 회원은 본회의 행사와 제반 활동에 자기 의사를 표현을 제한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심의,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1년 이후 동아리 활동 재개를 신청하지 못한 동아리는 아기동아리로 강등한다.
- ⑥ 5항 적용 이후 1년 간 활동 재개를 신청하지 못한 동아리는 제명한다.

제 47조 (탈퇴신청)

- 1 동아리 활동을 중단하길 원하는 정동아리 및 아기동아리는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 2 탈퇴를 신청하는 동아리는 개강 28일 내 아래의 양식을 준비하여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탈퇴 신청서
 - 2. 직전 학기 동아리 회장단 중 1인의 동의서
 - 3. 해당 학기 동아리 회장단 중 1인의 동의서
 - 4. 지도 교수 동의서
- 3 동아리방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는 탈퇴 신청서 승인 후, 15일 이내로 동아리방을 정리해야한다.

제 9 장 징 계

제48조 (징계 및 적용 기간)

- ① 징계는 벌점제로 운영되며 벌점에 따라 동아리를 강등하거나 제명한다.
- ②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매년 1월 1일 새로 적용한다.

제49조 (동아리 벌점)

모든 벌점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서 부여한다. 벌점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1. 1년 동안 동아리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이 없을 경우 (30점)
- 2. 회장단 중 1인 이상의 총회 불참석 시 (10점)
- 3. 회장단 중 1인의 동아리대표자회의 불참석 시 (10점)
- 4. 동아리대표자회의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공식적인 요구에 불응할 시 (10점)
- 5. 분과지원금을 신청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썼을 시 (10점)
- 6. 동아리방 내 고의적 기물 파손 및 동아리방 내에서의 음주, 흡연, 취사, 고성방가, 음란행위를 하였을 시 (10점)
- 7. 매 학기 기획서 및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겼을 시 (10점)
- 8.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30점)
- 9. 동아리방의 불결 및 동아리방 외 공동구역의 물품 방치를 한 경우 (5점)
- 10. 기타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15점, 6점 이상의 경우 분과대표들과의 협의)
- 11. 제 6조의 3에 언급된 기한 내에 동아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0점)
- 12. 학기 내에 동아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0점)

제49조의 2 (벌점 예외사항)

- ① 아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② 회장단 중 불참석한 회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총회 불참석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1. 직계가족 경조사 및 이와 동등한 경우
- 2. 학생의 병가 및 입원
-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4. 해당 학기 수강 중인 학부 수업시간인 경우
- ③ 회장단 모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고 집행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총회 및 동아리대표자회의 불참석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1. 직계가족 경조사 및 이와 동등한 경우
- 2. 학생의 병가 및 입원
-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4. 해당 학기 수강 중인 학부 수업시간인 경우
- 5. 해당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 인정되는 자체 행사가 있는 경우. 단, 이 경우 총회 및 동아리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집행부는 총회 및 동아리대표자회의 1일 전까지 불참사유 인정 여부를 해당 동아리에게 알려야 한다. 집행부와 동아리 간에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분과대표들의 중재를 받는다.

제50조 (강등)

- ① 정동아리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동아리를 아기동아리로 강등한다.
 - 1. 회칙 제8장에 의거 15인 미만이 활동하는 정동아리
 - 2. 동아리 벌점이 20점 이상인 정동아리
- ② 강등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1. 강등이 결정되었을 경우 이를 총동아리연합회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한다.
 - 2. 강등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3. 강등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7일 이내로 비워야 한다.
- ③ 강등 절차의 집행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서 한다.
- ④ 동아리의 제명은 아래 각 호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1. 강등이 되었을 시 2학기간 승격 심사가 불가능하다.
 - 2. 강등이 되었을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과 비품이 박탈된다.

제51조 (제명)

- ① 제명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1. 회칙 제8장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
 - 2. 당해 연도 강등된 동아리의 벌점이 30점 이상 누적된 경우
 - 3. 아기동아리의 벌점이 해당 연도 20점 이상 누적된 경우
 - 4.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동아리
- ② 제명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1. 제명이 결정되었을 경우 이를 총동아리연합회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한다.
 - 2. 제명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3. 제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7일 이내로 비워야 한다.
 - 4. 제명된 동아리는 등록이 취소된다.
- ③ 제명 절차의 집행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서 한다.
- ④ 동아리의 제명은 아래 각 호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1. 제명된 동아리의 이름으로 2년 간 교내 활동이 금지된다.
 - 2. 제명된 동아리 회장단은 3학기간 본회 등록이 불가능하다.
 - 3. 제명된 동아리의 동아리방과 비품이 박탈된다.

제52조 (이의신청)

- ① 벌점, 강등, 제명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아리 회장단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벌점에 관한 이의 신청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하고 분과대표와의 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다.

③ 강등, 제명에 관한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하고 동아리대표자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다.

제 10 장 선거

제53조 (선거권)

- ① 선거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선거인단에게 주어진다.
- ② 선거인단은 각 정동아리 회장단으로 한다.

제54조 (피선거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 1. 2인 1조 공동 입후보자
- 2. 본회의 동아리 회장 3인 이상이 포함된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 본회에 등록한 정회원인 자
- 4. 본회에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입후보 현재 재학중인 자
- 5. 선거 시행 학기의 학생회비를 해당학기에 납부한 자

제55조 (후보자 등록)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 여 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후보지원서
- 2. 후보 경력서
- 3. 동아리 회장 3인 이상이 포함된 30인 이상의 추천인 명부(단, 복수 추천은 효력이 없다.)
- 4. 동아리 회원 증명서
- 5. 학생회비 납입 서류(선거가 치러지는 당해 학기의 것)

제56조 (입후보 심사)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시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제5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5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한다.
- ② 제1항의 심사 회의에는 정회장후보와 부회장후보로 입후보하려는 자 모두 참석하여야 한 다.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불참한 입후보하려는 자의 후보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하려는 자가 제55조의 구비 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 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심사 결과 제5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입후보하려는 자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제57조 (후보자의 최종 등록)

제56조 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58조 (선거일정)

-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선거일은 11012월 중으로 한다.
- ② 선거일은 총동아리연합회가 결정하고, 이를 4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9조 (후보 정책 발표)

- ① 후보자는 후보 정책 발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후보 정책 발표는 선거 당일 선거인단의 2/3 이상이 출석한 동아리 총회에서 투표 전에 실시한다.
- ③ 후보 정책 발표의 진행방식은 동아리 총회 의장이 결정한다.

제60조 (선거 방법)

-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인단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출마 시에는 찬반 투표로 하며, 찬성이 50% 미만인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61조 (개표)

- ① 개표는 투표가 마친 후, 투표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즉시 실시한다.
- ②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 ③ 표의 유□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2조 (당선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63조 (보궐선거)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공석이 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잔여 임기가 30일 이내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② 부회장의 유고 시는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유고의 개념은 특별한 사유로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 ④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과대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임시 집행부가 구성된다.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임기가 남은 집행부가 있다면 해당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여 구성한다. 운영 방식은 다른 회칙들에 위반되지 않는 선 안에서 임시 집행부의 방식에 따른다.

제64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단독 출마의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50% 미만인 경우
- 2.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3.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 ② 재선거의 시기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총회에서 임시 집행부를 구성□운영한다.
- ④ 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임시 집행부를 구성□운영한다.

제 11 장 투 표

제65조 (투표)

동아리대표자회의 및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표결 사항들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장 회 칙 개 정

제66조 (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발의할 수 있다.

- 1. 총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
- 2. 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한 발의
- 3. 회원 1/7 이상의 연명에 의한 발의

제67조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동아리연합의장이 이를 공고하되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68조 (의결)

공고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의결한다.

제69조 (공포)

- ①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총동아리연합의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② 개정된 회칙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학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